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김부겸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75~79세 분들에 대해서도 생전안장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범죄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전안장 심의대상 확대(제12조의2 제2항)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함
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범죄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정비하고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함(제13조제1항 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80세 이상’을 ‘75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의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제12조의2(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②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u>80세 이상</u> 을 말한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u>75세 이상</u> 을 말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 ----- ----- ----- ----- ----- ----- ----- ----- ----- ----- -----
1.~2의2. (생략)	1.~2의2. (현행과 같음)
3. <u>금고 1년 이상의 실형</u> 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u>금고 이상의 형</u>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583 (044) 202 - 5592